

2024년 건설업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안내

I.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개선 사업

1 지원대상

○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건설업 본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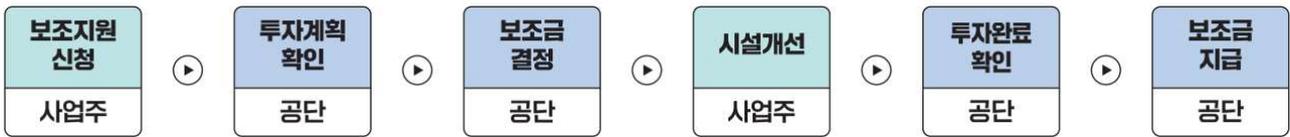
<지원 제외 대상>

-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·건축공사업에 한함)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-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산재보험미가입(체납) 사업주 등

2 지원한도 및 절차

○ 지원한도: 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70%, 당해연도 동일 품목 1회에 한함)

○ 지원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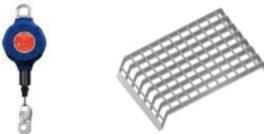
3 신청 방법

○ 신청기간 및 방법: 재원 소진 시 까지 <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만 접수 가능 >

※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: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➡ 알림마당 ➡ 서식모임 및 자료실 (문의: ☎ 1544-3088)

4 주요 지원품목

- 끼임·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
- 세부 품목은 『건설업 본사·현장 지원 가능 품목 및 지급기준』 참조

			
<p>1 고소작업대 (KCs 안전인증품)</p>	<p>2 추락방지시설 (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 임차료) ☞ 50억 미만 건설현장</p>	<p>3 추락방지시설 (안전블록세트, 지붕채광창 안전덮개, 안전난간, 개구부 덮개, 이동식 사다리(S마크 안전인증제품) 등)</p>	<p>4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재해예방설비 (승강로용 브래킷, 작업발판 등)</p>
			
<p>5 K-사다리 (S마크 안전인증품)</p>	<p>6 건설기계충돌예방설비 (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설비, AVMS일체형, 자동안전 킥커플러)</p>	<p>7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설비 (후방카메라, 인체감지센서)</p>	<p>8 화재·폭발 예방설비 (환기팬, 임시소방시설, 용접방화포, 복합가스농도측정기, 가스경보장치 등)</p>

II. 건설업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

1 지원대상

○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건설업 본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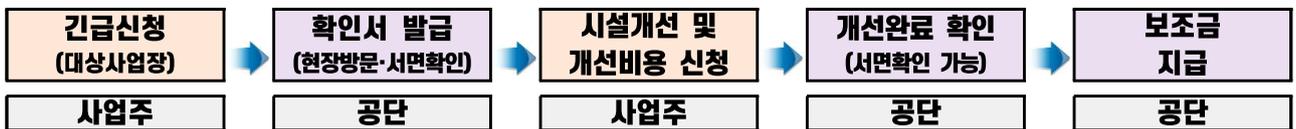
<지원 제외 대상>

-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·건축공사업에 한함)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
 -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 -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 - 산재보험미가입(체납) 사업주 등

2 지원한도 및 절차

○ 지원한도: 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70%)

○ 지원절차



3 신청 방법

○ 신청기간 및 방법: 재원 소진 시 까지

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(FAX, 우편, 방문) 신청(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필요) 〉

※ 오프라인 신청, 클린사업(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등) 기지원 내역 확인 후 일선기관 신청(문의: ☎ 1544-3088)
☞ 기지원내역 확인방법 :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공지사항 참조

4 지원품목

○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

품목명	최대지원한도	지원기준
	냉방 능력에 따라 최소 796천원 부터 최대 1,791천원 까지 차등 지원	▶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% 이내 지원
	그늘막 면적에 따라 최소 163천원 부터 최대 224천원 까지 차등 지원	▶ 현장과의 작업거리,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 판단·지원